

성남판교 산운마을9단지 대방노블랜드 아파트 우선 분양전환 후 잔여세대 입주자모집공고(15세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공고 당일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06.03.28.)를 거쳐 임차인을 모집하여 10년 임대(2009~2019) 후 분양전환을 실시한 주택 중 “입주자 퇴거로 사업주체에 명도된 주택”으로 신규 아파트가 아니며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된 주택가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85㎡이하 국민주택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 하여 공급하오니 청약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기존 입주자의 퇴거 후 상태 그대로 인계하여 드리므로 당첨자는 반드시 계약 전 세대 내부를 확인하시고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시설물(디지털도어락, 보일러, 도시가스, 수도, 샷시, 도배, 장판, 욕실, 싱크대, 세대열쇠, 전기·전자제품, 기타 시설물 및 마감재 등)의 미비, 파손, 노후화, 청소불량, 오염, 철거 등을 사유로 향후 하자보수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당첨자는 사업주체(대방건설(주))로 연락하여 방문 일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세대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잔금 납부기한이 계약체결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내로 기간이 짧으며, 주택가격에서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90% 금액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는 점을 유의하셔서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공고에 따른 당첨자가 선정되지 않는 경우 사업주체에서 자체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

단지 주요정보

※ 분양문의 : 1577-7347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경기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재당첨제한	택지유형
국민주택	경기도 성남시 1년이상 계속 거주자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비규제지역	5년 (과밀억제권역, 85㎡)	공공택지/대규모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5.02.28.(금)	2025.03.10.(월)	2025.03.11.(화)	2025.03.17.(월)	2025.03.20.(목)	2025.03.28.(금) ~ 2025.04.01.(화)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12.1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2.1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계약취소주택,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12회 이상 납입한 자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4호의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주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4호)	5년 (과밀억제권역, 85㎡이하)

-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기타 수도권(주민등록표등본 기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접수가 가능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 후 분양전환 실시한 주택 중 「입주자 퇴거로 사업주체에 명도된 주택」입니다. 기존 입주자의 퇴거 후 주택의 내·외부에 대한 별도 보수 공사 없이 현재 상태 그대로 공급하므로 신청자는 반드시 해당사항을 확인하시고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시설물(디지털도어락, 보일러, 도시가스, 수도, 샷시, 도배, 장판, 욕실, 싱크대, 세대열쇠, 전기·전자제품, 기타 시설물 및 마감재 등)의 미비, 파손, 노후화, 청소불량, 오염, 철거 등을 사유로 일체의 하자보수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사무실(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48, 대방빌딩 8층)에서 본인확인 후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중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중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예) 청약예·부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국민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민영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PC, 모바일) 청약만 가능 (**건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2.28.(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기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 (구)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85㎡이하)으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06.03.28)를 거쳐 임차인을 모집하여 10년 임대(2009~2019) 후 분양전환을 실시한 주택 중 “입주자 퇴거로 사업주체에 명도된 주택”으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이며, 공급금액은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된 주택가격으로 계약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기존 입주자의 퇴거 후 주택의 내·외부에 대한 별도 보수공사 없이 현재 상태로 인계하여 드리므로 계약자는 반드시 주택을 방문하여 세대 내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설물(디지털도어락, 보일러, 도시가스, 도배, 장판, 욕실, 싱크대, 세대열쇠, 기타 시설물 및 마감재 등)의 미비, 파손, 노후화, 철거, 청소불량, 오염, 철거 등을 사유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체결 후 시설물 등의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임차인으로 거주하였던 입주자가 설치한 부합물은 당사에서 설치한 시설이 아니며, 분양가격에 해당 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각 세대별 임차인으로 거주하였던 입주자의 주민등록 전출 신고가 지연되어 '거주불명등록 신청'접수된 상태이며, 1~2개월의 행정절차 소요 후 거주불명자로 등록될 예정입니다.

- 902동 403호의 경우 기존 임차인으로 거주하였던 입주자 앞으로 근저당권(을구 2번 한국토지공사 금55,000,000원)이 설정되어있으나 분양계약체결 전까지 말소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 입주잔금 납부기한 후(입주잔금 납부기한 이전에 입주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일을 말함)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제세공과금, 장기수선충당금, 법령의 제·개정 등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투자비 등은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 기간 이내에 소명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4조에서 정한 기간에 따라 보관 후 폐기합니다.
- 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청약통장 사용 불가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등에 이의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본 아파트의 판매 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5.03.10.(월)	2025.03.11.(화)	2025.03.17.(월)	2025.03.20.(목)	2025.03.28.(금) ~ 2025.04.01.(화)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 대방건설(주) 본사 1577-7347(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48, 대방빌딩 8층)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성남시 주택과 - 3831호(2025.02.25.)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산운로 126 (산운마을9단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8층 4개동 총 266세대 중 우선 분양전환 후 잔여 15세대

■ 부대복리시설의 내용 : 관리사무소, 경비실, 노인정,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등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본 아파트는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06.03.28.)를 거쳐 임차인을 모집하여 10년 임대(2009~2019) 후 분양전환을 실시한 주택 중 “입주자 퇴거로 사업주체에 명도된 주택”으로 신규 아파트가 아니며 2009.10.19. 신설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는 적용대상이 아님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조의2에 따른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 주차장 차로(2.31m), 주차장 출입구(2.30m)

■ 입주시기 : 2025년 04월 예정(기 준공 완료 현장으로 잔금 완납 후 즉시 입주 가능)

■ 공급대상

주택구분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동호	일반공급 세대수	입주예정 시기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국민주택	2025000032	01	059.9300	59	59.9300	20.9900	80.9200	46.6100	127.5300	46.7225	4	0903-0502,0903-0503, 0903-0601,0903-1002	4	기 준공 현장으로 잔금 완납 후 즉시 입주 가능
		02	084.9900A	84A	84.9900	23.9200	108.9100	66.1200	175.0300	66.2599	7	0902-0301,0902-0504, 0902-0604,0902-0902, 0902-1304,0902-1601, 0902-1801	7	
		03	084.9900B	84B	84.9900	23.9700	108.9600	66.1200	175.0800	66.2599	4	0902-0403,0902-1403, 0902-1503,0902-1803	4	
-		합 계									15	-	15	-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m²,원 / VAT포함)

주택형	약식표기	순번	동호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입주예정 시기
					계약시	입주시 (계약 후 30일 이내)	
059.9300	59	1	0903-0502	1,177,400,000	117,740,000	1,059,660,000	기 준공 현장으로 잔금 완납 후 즉시 입주 가능
		2	0903-0503	1,170,500,000	117,050,000	1,053,450,000	
		3	0903-0601	1,180,500,000	118,050,000	1,062,450,000	
		4	0903-1002	1,209,000,000	120,900,000	1,088,100,000	
084.9900A	84A	1	0902-0301	1,409,850,000	140,985,000	1,268,865,000	
		2	0902-0504	1,411,000,000	141,100,000	1,269,900,000	
		3	0902-0604	1,417,150,000	141,715,000	1,275,435,000	
		4	0902-0902	1,453,000,000	145,300,000	1,307,700,000	
		5	0902-1304	1,467,500,000	146,750,000	1,320,750,000	
		6	0902-1601	1,482,500,000	148,250,000	1,334,250,000	
		7	0902-1801	1,504,050,000	150,405,000	1,353,645,000	
084.9900B	84B	1	0902-0403	1,402,600,000	140,260,000	1,262,340,000	
		2	0902-1403	1,482,250,000	148,225,000	1,334,025,000	
		3	0902-1503	1,489,500,000	148,950,000	1,340,550,000	
		4	0902-1803	1,496,800,000	149,680,000	1,347,120,000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호별 구분없이 주택형, 청약순위별로 접수를 받고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 추첨으로 배정합니다.

※ 공급금액 납부 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익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잔금은 약정된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에 따른 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기존 입주자의 퇴거 후 주택의 내.외부에 대한 별도 보수공사 없이 현재 상태로 인계하여 드리므로 신청자는 반드시 세대 개방일에 주택을 방문하여 세대 내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설물(디지털도어락, 보일러, 도시가스, 도배, 장판, 욕실, 싱크대, 세대열쇠, 기타 시설물 및 마감재 등)의 미비, 파손, 노후화, 철거, 청소불량, 오염, 철거 등을 사유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록세가 미포함 되어 있으며, 이는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과세관청에 취득세를 자진납부 하여야 하며,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소,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관리사무소, 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 등으로 등기면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발코니는 전 세대가 확장형으로 시공 완료되었고, 상기 공급금액은 세대 현황(발코니 확장)을 감안한 감정평가 금액입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써,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기타 수도권(주민등록표등본 기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자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 2순위도 당첨 시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명단 관리되며, 통장 재사용 불가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 ①지역우선공급 → ②순위 내 경쟁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우선공급 → ③추첨 ■ ① 지역우선공급 - 본 아파트가 소재한 판교택지개발지구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시행 지역(수도권지역에 한정한다)으로서 면적이 660,000㎡ 이상인 지역]로서 동 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이상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동 규칙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우선 공급(성남시 1년이상 계속거주자 30%, 경기도 6개월이상 계속거주자 20% 우선 공급)하고 해당 지역 주택공급신청자가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기타 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 <table><tr><th>기준일</th><th>지역구분</th><th>우선공급비율</th><th>지역 우선공급 대상자</th></tr><tr><td rowspan="3">입주자 모집공고일 (2025.02.28.)</td><td>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성남시)</td><td>30%</td><td>공고일 현재 성남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2024.02.28. 이전부터 계속 거주(2024.02.28. 전입한 경우 포함)</td></tr><tr><td>② 경기도</td><td>20%</td><td>공고일 현재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2024.08.28. 이전부터 계속 거주(2024.08.28. 전입한 경우 포함)</td></tr><tr><td>③ 기타 수도권</td><td>50%</td><td>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경기도(6개월 미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신 분</td></tr></table> ※ 동일순위 내 지역 우선공급 기준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주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됩니다. 이 경우 우선공급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는 본인 생년월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공사로 제출하여 해당 우선공급 기간 중에 해당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함을 증명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함이 밝혀졌을 때는 부적격 처리 됩니다.(단순 해외여행, 친지방문 또는 출장 등 단기간 체류는 무방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해외 체류기간이 연속하여 90일을 초과하거나 전체기간이 연간(매	기준일	지역구분	우선공급비율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5.02.28.)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성남시)	30%	공고일 현재 성남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2024.02.28. 이전부터 계속 거주(2024.02.28. 전입한 경우 포함)	② 경기도	20%	공고일 현재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2024.08.28. 이전부터 계속 거주(2024.08.28. 전입한 경우 포함)	③ 기타 수도권	50%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경기도(6개월 미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신 분
	기준일	지역구분	우선공급비율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5.02.28.)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성남시)	30%	공고일 현재 성남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2024.02.28. 이전부터 계속 거주(2024.02.28. 전입한 경우 포함)											
② 경기도		20%	공고일 현재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2024.08.28. 이전부터 계속 거주(2024.08.28. 전입한 경우 포함)												
③ 기타 수도권		50%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경기도(6개월 미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신 분												

- 년) 183일을 초과하는 분은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 경기도 거주기간 산정 시 경기도내 시·군 사이에서 전입·전출한 경우에는 합산 가능합니다.
-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자가 3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20% 물량의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성남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중 낙첨자와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중 낙첨자는 수도권 거주자(50%)와 경쟁합니다.
- ※ 동일순위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비율 만큼 우선공급하며, 해당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성남시 1년 이상 계속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된 세대는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한 후 최종 미달된 세대는 수도권 거주자 공급세대에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② 순위 내 경쟁

단계		내용
순위 내 경쟁 시	1순위	1)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 2024.11.01. 이후 납부한 금액은 매월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0조제5항에 따라 산정) 2) 저축 총액이 많은 자 3) 추첨
	2순위	추첨

※ 주택소유 및 과거 당첨사실 판단 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비고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 내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 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 부부간 중복신청하여 모두 당첨 시 선 신청분 유효, 후 신청분 무효 처리(단, 예비신혼부부 제외)]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청약순위에 따라 청약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 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에 따라 각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우선공급합니다.
- 청약신청 시 기입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의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하며, 청약 이후 변동 사항 발생 시 당첨자는 사업주체에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계약체결 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각 목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PC, 모바일) 청약만 가능 (**건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5.03.17.(월) ~ 2025.03.26.(수)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5.03.17.(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인감증명서		- 용도에 「아파트계약용」으로 직접 기재, 본인 계약 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본인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포함 "상세"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계약장소(당사 사무실)에 비치
	○		실거래신고서		- 계약장소(당사 사무실)에 비치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계약장소(당사 사무실)에 비치
	○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증빙자료		- 자금조달계획서 상의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예 : 예금내역, 주식채권 거래내역 등)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3자 대리 시	○		위임장	본인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계약자)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안함(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신분증(대리인)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외 대리인 접수 불가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2.28.)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주체는 신청자격의 확인을 위해 상기 서류 이외의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서류발급 시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확인 할 수 있게 모두 공개로 발급해야 합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반드시 사업주체에 확인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일정

구분	계약일정	장소	비고
당첨자 계약체결	2025.03.28.(금) ~ 2025.04.01.(화)	대방건설(주) :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48, 대방빌딩 8층 (1577-7347)	일정 및 시간 변동 시 별도 안내

- ※ 계약금 납부 : 분양대금 납부계좌 입금 후 입금증 분양사무실 제출(분양사무실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에서 자체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아래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우리은행	1005 - 401 - 419039	대방건설(주)	-

- ※ 분양대금은 약정된 계약금, 잔금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 시 비교란에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당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
- ※ 계약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 지참 요망(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 잔금완납 후 청소, 인테리어, 철거, 입주 등이 가능합니다.
- ※ 입주잔금은 선납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일수에 따라 소정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연 7.86%)가 부과됩니다.
- ※ 입주잔금에 대한 대출은 개별적으로 금융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시 연체료 부과)
- ※ 잔금납부기한 종료 후 1개월 이내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별로 총 공급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계약금, 잔금 납부 약정일이 토,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최초 은행 영업일을 납부일로 합니다. (단, 연체료 납부 시에는 토, 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유의사항

- 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배치 상 쓰레기(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등) 분리 수거시설, 정화조 연동 시설과 인접 하는 세대는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층 호수는 동 호수 배치도를 필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 등으로 인해 인근 해당 동 및 세대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주거공용면적 (계단실 코아) 및 기타공용면적 (기계실, 주차장 등) 은 각 단지별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되었습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은 해당 단지의 공동주택 대지면적에서 세대별 분양면적 비율로 배분 산정하였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실 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된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저해 시 해당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신청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등 기타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따릅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 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 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청약 접수 전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자는 입주 시 타입별로 지정된 선수관리비(59타입 - 192,000원, 84타입 - 256,000원)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상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시행 / 시공	대방건설(주)	110111-075715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72, 5층(아이비프라자)

■ 분양사무소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48, 대방빌딩 8층 / 분양문의 1577-7347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